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12. 29(목) 10:20

## 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 
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의회사무국 소관)



**의회운영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82호
- 나. 제 출 자 : 도병두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2. 21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2. 21.

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검토 및 실질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원활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및 조례안·예산안 등 의안심사와 효율적인 의회·위원회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  
(안 제2조제3호 및 제7호)
- 나.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출자·출연기관·법인의  
기준 확대(안 제2조제6호)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범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구청장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) 이상인 사람</u></p> <p>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·법인의 임원</p> <p>7. <u>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·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직급 공무원</u></p>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 및 출자·출연기관·법인의 기준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구청장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(이에 상당하는 직급 포함) 이상인 사람과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·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집행부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출석·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2조제6호에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·법인의 임원진에 대하여 출석·답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의회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# 관계 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# 현행 조례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01. 13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, 2022. 01. 12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'98.7.3, '07.02.28, '08.04.08, '19.05.09 >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부구청장
2.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<개정 '98.9.26>
3.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<개정 '07.02.28, '08.04.08, 2022.1.12.>
4. 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<개정 '07.02.28, '08.04.08, 2022.1.12.>
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<신설 '19.05.09>

### 부 칙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'98.7.3)

이 조례는 1998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'98.9.26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(2007.2.2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2008.4.8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제1027호, 2019.5.9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(제1234호, 2022.1.12.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  
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**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